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. 22 선고 2020가단1160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12. 18.

판결 선고2021. 1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2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강영기

별지